이사회 운영기준

버전정보	개정일자
0	1975.02.01.
1	1994.12.01.
2	2004.06.01.
3	2009.01.01.
4	2011.07.01.
5	2014.04.29.
6	2014.12.23.
7	2015.06.25.
8	2017.06.16.
9	2019.02.27.
10	2019.08.05.
11	2021.12.13.
12	2022.03.21.
13	2022.05.27.
14	2023.04.24.
15	2025.11.03.
16	2026.03.26

posco
FUTURE M

1. 목적

이 기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세부적인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의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이사회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이사회

4.1.1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4.1.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2 의장

4.2.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4.2.2 의장은 필요 시 실무담당자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해당업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4.2.3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이사회 소집권한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2.4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소집권자

4.3.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4.3.2 의장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3.3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전문위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5.1 위원회 구성

5.1.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1.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5.1.3 ESG 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5.1.4 평가보상위원회는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5.2 위원장

5.2.1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독립이사 중 호선한다.

5.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5.2.3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3 위원회의 소집

5.3.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3.2 대표이사 또는 소속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5.4 이사회에의 재부의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5.5 위원회 부의사항

5.5.1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5.5.2 ESG 위원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5.5.3 평가보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5.6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7 준용

위원회의 소집절차, 제안 및 의안설명, 성립과 의결, 관계인의 참석, 의사록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6. 업무절차

6.1 이사회 안건 부의

6.1.1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 요청서와 부의안건의 내용을 이사회 주관 부서장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6.2 이사회 소집

6.2.1 주관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회의일 7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부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3 부의 안건 설명

6.3.1 회의에 부의 될 의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주관 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당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6.4 이사회 의사록 작성

7. 기록 및 관리

7.1 의사록 등의 작성

7.1.1 이사회의 주관 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2 보존기간

7.2.1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 년간 보존한다.

8. 관련문서

8.1 이사회 부의사항 (별표 1)

8.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의사항 (별표 2)

8.3 ESG 위원회 부의사항 (별표 3)

8.4 평가보상위원회 (별표 4)

9. 첨부

서식 No.	서식명	비 고
PCP-A-101-F01	이사회 의사록	-
PCP-A-101-F02	이사회 부의 요청서	-
PCP-A-101-F03	이사회 소집 통지서	-

별표 1.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
다. 정관의 변경
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사업계획(중장기 경영방침 계획, 경영합리화 계획 등)
나.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다.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선임
라.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재무, 기획) 임명승인
마.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바.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 이사회운영규정
(2) 내부회계관리규정
(3)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4) 기타 중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나. 자기자본 1%이상의 Project 성 투자
다. 자기자본 1%이상의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라.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마.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바. 이익소각의 결정
사. 중요한 차입금 (신규 장기차입)
아.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차. 기부찬조 (5 천만원 초과)
카. 결손처분 (6 억원 초과)

4. 기타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100 억원 이상)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중대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다.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라. 담보제공, 보증, 채무인수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마. 국내외 지점, 사업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바. 주주명부 폐쇄 결정
사.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아. 준법지원인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5. 이사회 보고사항

가.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련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별표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부의사항

1. 독립이사 후보의 결정

2. 독립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3. 기타 독립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3. ESG 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 우려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신규 투자 및 중대한 변경이 있는 기존 투자계획
다. 신주 발행
라. 자기주식 처분 및 포괄적 주식교환
마. 합병/분할합병 및 분할
바.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규모 감자, 자산/영업양수도)

2.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한 사항

별표 4. 평가보상위원회 부의사항

1.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사전심의

3.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부 칙

제 1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5 조, 제 8 조, 별표 2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